

# 보수규정

인재경영실 노사복지부

전부개정 2019.06.26. 규정 제374호  
개정 2019.12.27. 규정 제387호  
개정 2020.02.16. 규정 제391호  
개정 2020.12.31. 규정 제419호  
개정 2021.03.04. 규정 제423호  
개정 2021.12.31. 규정 제447호  
개정 2022.02.28. 규정 제450호  
개정 2022.12.28. 규정 제469호  
개정 2023.03.03. 규정 제472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497호  
개정 2024.03.04. 규정 제50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 등의 보수, 퇴직급여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비상임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2021.3.4.>

1. “보수”라 함은 기본급, 직무급, 상여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개인의 경력과 직급 등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 및 책임수준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말한다.
4. “상여금”이라 함은 정해진 달에 지급하는 고정급적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5.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본급, 상여금 등을 통합하여 연봉제 적용대상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6 “성과연봉”이라 함은 기존 수당 등을 통합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 7 “경영평가성과급”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 8 “내부평가급”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기존 인건비 전환금으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9.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1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2. “퇴직급여”라 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13.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4.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15.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전문직 및 운영직을 포함하며, 별도 정의가 없는 경우 1급은 선임연구위원, 2급은 연구위원, 3급은 부연구위원, 4급은 주임연구원을 포함한다.

## 제2장 보수

**제4조(기본급)**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의 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급은 그 달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며, 시간급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그 달의 근무 기간 중에 있는 유급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지급일을 정한 경우와 퇴직자, 입대·육아휴직자의 해당 월 보수는 그 지급일을 제1항의 보수지급일과 달리할 수 있다.

③ 보수 지급일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②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강임, 강등, 감봉, 전직, 전보, 휴직, 정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대하여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의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자에게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수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내: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70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기본급 및 기본연봉 월액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23.12.27.]

**제9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는 보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7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보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수사 결과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8.>

1. 강등처분을 받은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보수는 전액 감액
2.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기간 동안 보수는 전액 감액
3. 감봉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감봉 1개월에 대하여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식대보조비, 직무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1조(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결근자 및 휴가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수당 및 그 밖의 보수

**제12조(수당)** 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식대보조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수당 중 관리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식대보조비는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④ 수당의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7.]

**제13조(직무급)** 직무급은 직급 및 직종, 자격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준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봉제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에게 매분기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기간(매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 중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15조(성과급)**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이하 “경평성과급”이라 한다)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대상기간 중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3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징계 및 제76조제2항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시행일이 속한 당해연도분 경평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1.>
- ③ 소속직원이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토록 한다. <신설 2019.12.27.>
- ④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 제4장 연봉제

**제16조(적용대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자는 임원, 2급 이상 직원, 연구직, 전문직으로 하며, 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

**제17조(연봉제 보수체계)** ① 임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경평성과급

② 직원의 연봉제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봉
2. 성과연봉
3. 직무급
4. 경평성과급
5. 내부평가급
6. 수당

**제18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산정하고, 별표 5의 기본연봉 인상률표에 따라 인상한다.

**제19조(성과연봉 등)** 직원의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연봉, 경평성과급, 내부평가급은 보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전년도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20조(연봉의 산정 및 조정)** 연봉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봉조정위원회)** ①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봉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봉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퇴직급여

**제22조(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라 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부담금 적립 및 운용, 부담금 납입절차, 수급조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부담금 및 퇴직연금 수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퇴직연금규약과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퇴직급여지급)**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
2. 직권면직, 해임 또는 파면
3.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4. 임원이 퇴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퇴직급여지급액)** ①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다만,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퇴직일 이전 3월 동안 휴직, 병가, 특휴 및 공로연수(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로 보수가 감액된 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한다. 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민연금법(법령 제5623호, 1998.12.31 이전에 시행된 법을 말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에서 그 해당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퇴직금중간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DB제도 또는 DC제도에 가입한 자
3. 기타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7조(근속기간 계산)** ① 퇴직급여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심사평가원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며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1년
2. 직무로 인한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6호,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②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한 후 익일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1항의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27.>

**제28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제한)** 임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개정 2022.12.28.>

**제29조(사망자의 퇴직급여지급)**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0조(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 제66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이외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인사규정」 제66조제2항에 따른 한시적인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인사규정」 제66조제4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은 별표 1의 퇴직 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장 기타

**제31조(계약에 의한 보수)** ① 「인사규정」 제72조에 따라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운영직관리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연봉조정위원회 또는 「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개방형직위의 보수)** ①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라 임용된 개방형직위 직원의 기본 연봉은 경력, 이전 기관에서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별표 4의 기본연봉 한계액표 내에서 상호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전문직 중 심사위원의 보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② 개방형 직위 직원의 연봉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34조(해외근무자의 보수)** 국제기구 파견 등 해외근무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외근무운영지침」을 따른다.

**제35조(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 유연근무제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실비보상적 경비)** 임원, 직원, 각종 위원 및 고문·촉탁·일용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비용,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복리후생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보칙)** 이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374호, 2019.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원 장	138,644
상 임 감 사	110,915
상 임 이 사	110,915



부칙<규정 제387호, 2019.12.27.>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4, 별표6의 3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91호, 2020.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원 장	141,140
상 임 감 사	112,912
상 임 이 사	112,912

부칙<규정 제419호, 2020.12.3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23호, 2021.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원 장	145,092
상임감사	116,074
상임이사	116,074

**부칙<규정 제447호,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별표4 및 별표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50호, 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의 기본급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원 장	146,398
상임감사	117,119
상임이사	117,119

**부칙<규정 제46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확정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 별표1, 별표4,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472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임원 기본연봉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다음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단위: 천원)

구분	기본연봉
원 장	148,448
상임감사	118,758
상임이사	118,758

**부칙<규정 제497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별표1, 별표2(‘식대보조비’에 한함)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504호, 2024.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9.12.27., 2020.12.31., 2021.12.31., 2022.2.28., 2022.12.28., 2023.3.3., 2023.12.27.>

직원의 기본급표(제4조 및 제30조제3항 관련)

○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단위 : 원)

구분	2급	3급	4급	5급	6급가	6급나
1호봉	3,854,900	3,538,400	3,076,000	2,799,900	2,640,800	2,434,500
2호봉	3,931,600	3,604,300	3,148,700	2,869,100	2,710,300	2,498,700
3호봉	4,009,500	3,671,600	3,222,900	2,939,800	2,781,100	2,565,400
4호봉	4,089,800	3,753,900	3,300,600	3,022,100	2,861,500	2,635,800
5호봉	4,172,200	3,837,500	3,384,000	3,104,800	2,944,800	2,713,700
6호봉	4,256,900	3,921,900	3,468,500	3,188,600	3,030,200	2,793,000
7호봉	4,342,600	4,011,100	3,555,700	3,274,800	3,118,300	2,873,600
8호봉	4,431,900	4,101,700	3,646,000	3,362,400	3,206,300	2,955,500
9호봉	4,523,400	4,193,100	3,737,700	3,449,800	3,295,800	3,039,800
10호봉	4,617,200	4,285,800	3,831,500	3,543,400	3,391,200	3,125,100
11호봉	4,713,200	4,381,000	3,927,900	3,640,700	3,490,500	3,217,000
12호봉	4,811,200	4,478,400	4,022,000	3,736,500	3,587,200	3,306,500
13호봉	4,911,900	4,574,600	4,113,600	3,828,900	3,679,100	3,394,500
14호봉	5,014,600	4,669,600	4,205,300	3,920,100	3,770,900	3,481,400
15호봉	5,121,900	4,764,700	4,294,700	4,009,800	3,861,500	3,567,100
16호봉	5,216,900	4,858,500	4,382,800	4,098,700	3,952,100	3,651,200
17호봉	5,307,200	4,947,700	4,469,800	4,186,000	4,041,300	3,734,200
18호봉	5,393,000	5,035,800	4,556,700	4,272,400	4,129,500	3,816,100
19호봉	5,476,600	5,122,700	4,642,500	4,357,500	4,217,500	3,896,500
20호봉	5,560,200	5,203,900	4,727,100	4,441,200	4,304,400	3,975,700
21호봉	5,640,200	5,283,900	4,809,400	4,523,800	4,391,200	4,053,900
22호봉	5,719,300	5,362,900	4,891,500	4,605,300	4,477,000	4,130,600
23호봉	5,796,200	5,439,200	4,971,700	4,685,500	4,561,100	4,206,000
24호봉	5,870,600	5,514,500	5,051,500	4,764,400	4,644,400	4,280,300
25호봉	5,943,000	5,586,300	5,130,200	4,842,000	4,726,300	4,353,400
26호봉	6,013,000	5,657,100	5,206,700	4,918,700	4,806,800	4,425,000
27호봉	6,081,800	5,725,400	5,274,700	4,994,100	4,885,100	4,495,400
28호봉	6,145,000	5,792,600	5,339,300	5,067,900	4,960,800	4,563,400
29호봉	6,206,100	5,858,900	5,402,800	5,140,800	5,033,800	4,630,200
30호봉	6,260,200	5,921,400	5,466,300	5,212,600	5,104,500	4,695,500
31호봉 이상은 1호봉마다 18,000원씩 가산						

[별표 2] <개정 2019.12.27., 2020.2.16., 2020.12.31., 2021.12.31., 2022.12.28., 2023.12.27., 2024.3.4.>

수당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수당명	지 급 액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 근무명령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 다만, 정상근무에 대체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0.5/209*×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 - 야간근무명령을 받고 실제 근무에 임한 3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
연가보상수당	통상임금/209*×근무시간×잔여 연가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 - 중도 퇴직하는 자 중 잔여연가일수가 발생한 직원에게 지급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 - 직계존속 등: 월 20,000 - 직계비속 등: 월 20,000 (단, 직계비속 중 첫째자녀는 월 30,000, 둘째자녀는 월 70,000, 셋째이상 자녀는 월 110,000 지급)	- 재직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게 지급. 다만 자녀는 예외로 함

수당명	지 급 액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대우수당	기본급 × 4.6%	- 인사규정 제29조에 의거,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
관리업무수당	기본급 × 12.8%	- 부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
장기근속수당	월 50,000 +{(근속년수-5) × 10,000} - 최고 월 200,000까지 지급	-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
명절휴가비	월기본급× 15% × 2회	- 설과 추석일 현재 재직 중이고 보수가 지급되는 직원에게 지급일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 ※ 설과 추석일 현재 직위해제, 감봉에 의하여 보수가 감액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
식대보조비	월 160,000	-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 이 경우 보수 규정 제16조에 따른 적용대상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 시간선택제, 임금피크제 등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개정 2020.2.16., 2021.3.4., 2022.2.28., 2023.3.3., 2024.3.4.>

임원 기본연봉표(제18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기본연봉
원 장	154,140
상임감사	123,312
상임이사	123,312

[별표 4] <개정 2019.12.27., 2020.12.31., 2021.12.31., 2022.2.28., 2022.12.28., 2023.12.27.>

기본연봉 한계액표(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 연)

구분	대상	상한액	하한액
전문직	자동차보험 심사위원	142,000	108,000
	자동차보험 재정위원	121,000	85,000
1·2급	1급	101,000	56,300
	2급	97,000	46,700
연구직	소장	133,000	98,000
	선임연구위원	101,000	56,300
	연구위원	97,000	46,700
	부연구위원	87,000	39,300
	주임연구원	61,000	31,900

※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기본연봉 한계액표의 적용을 받지 않음



[별표 5] <개정 2023.12.27.>

기본연봉 인상률표(제18조제2항 관련)

구분		S	A	B	C	D
1·2급,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등급배분율	10%	15%	50%	15%	10%
	차등인상률	$\alpha+1\%$	$\alpha+0.5\%$	$\alpha^*$	$\alpha-0.5\%$	$\alpha-1\%$

\*  $\alpha$ 는 기준인상률임. 등급별 인상률은 총인건비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별표 6] <개정 2019.12.27., 2020.12.31., 2021.12.31., 2022.12.28.>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제30조제2항 관련)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 퇴직 당시 기본급 × 정년잔여월수/2
5년 초과 10년 이내	○ 퇴직 당시 기본급 × (정년잔여월수 - 60)/4
10년 초과	○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2. 정년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지급액은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1급은 2급 기본급에 690천원을 가산하여 산정.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임금 감액률을 반영하여 산정